

미국 특허상표청, 2003년 수수료 개정(안)

자료원 : IPO Daily News, USPTO press releases 2003. 2. 4]

부시행정부는 2003년 2월 3일, 2004년 회계연도(2003. 10. 1~2004. 9. 30)의 USPTO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수수료 인상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2004년 USPTO 예산은 1조4천40억 달러(\$1.404 billion)로, 이는 2003년 예산에 비해서 5% 정도 증가한 것이다. 2004년에 수수료 수입의 전용 제안액은 1억달러(\$100 million)로, 예년에 비해서 50%나 감소한 것이며, 예상되는 수수료 수입의 6.6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다.

2004년 예산안은 USPTO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USPTO 사용자(출원인 및 권리자)들의 불만의 대상이었던 수수료 수입 전용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부시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점에 있

어서 그동안 수수료 전용문제의 중단을 적극적으로 토비해온 IPO를 비롯한 미국의 지적권 관련 기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USPTO가 질적 향상, 높은 생산성, 시장 질서에 맞춘 기관으로 거듭남으로써 미국 경제성장에 있어서 그리고 미국이 기술 지도력을 발휘함에 있어서 USPTO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USPTO는 자평하고 있다.

이에 따라 USPTO는 2003년 2월 4일, 개정된 특허 및 상표 수수료 인상법안을 발표하였다. 특허권자가 출원, 등록 및 유지에 드는 기본적인 수수료는 15.5퍼센트가 증가하였다. 많은 수의 청구항과 많은 분량의 면을 담고 있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더 많은 쪽의 인상이 제안되었다. 2002년 6월의 수수료 인상 초안에서 논란의 대상이었던 “징벌적” 수수료는 삭제되었다.

미국 수수료 관련 개정안의 비교

* 특허수수료

(단위 : 달러)

구	분	현행 (2003년 1월)	2002년 6월 개정안	2003년 2월 개정안
기본요금	출원료	750	300	300
	검색료	-	-	500
	심사료	-	1,250	200
	출원시 지불 소계	750	300	1,000*
	등록료	1,300	1,660	1,400
	제1회(3년 6개월) 유지료	890	900	900
	제2회(7년 6개월) 유지료	2,050	3,000	2,300
	제3회(11년 6개월) 유지료	3,150	5,000	3,800
	총계(출원, 등록, 유지)-(조기공개료 \$300포함)	8,140 (8,440)	12,110 (12,410)	9,400 (9,700)
	부가요금	독립항이 3개 이상인 경우	각 항당 84	제4항 : 160 제5항 : 320 제6항 : 640 6항 이상의 경우, 각 항당 직전 수수료의 125% 부과
총 청구항이 20개 이상인 경우		각 항당 18	21항-25항 : 80 26항-30항 : 160 31항-35항 : 320 36항-40항 : 640 40항 이상의 경우 5항 단위로 직전 수수료의 125% 부과	50
기간 연장료 (2개월 이내 연장신청의 예)		410	660	450
심판	PCT 국내진입단계 수수료 (USPTO가 국제예비심사 기관(IPEA)도 국제조사 기관(ISA)도 아닌 경우)	1,060	1550	1,000**
	심판 청구	320	520	500
	심판청구이유 보충서 제출 구두심리 청구	320 280	1,730 460	500 1,000

* 신속한 포기에 따라 부분적으로 환불가능

** 선행기술 조사 상태에 따라 부분적으로 환불가능

* 상표수수료

(단위 : 달러)

구	분	현행(2003년 1월)	2002년 6월 개정안	2003년 2월 개정안
상표출원 (각1류당)	서류출원	335	375	375
	전자출원	-	325	325
	신속심사	-	275	275

WIPO,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성장 도구로서 지적재산권 활용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간

[자료원 : "Study on Using Intellectual Property as a Tool for Economic Growth in the ASEAN Region",
WIPO : 윤재갑 WIPO 주제관 자료 제공]

동남아시아 국가협의체인 ASEAN은 1967년 설립된 이래로 무역, 산업, 과학기술,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지역간의 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해 왔다. ASEAN과 WIPO와의 협력회의(2001년 5월)에서 ASEAN은 아시아 지역에서 지적재산권이 경제성장의 도구로 활용된 것에 대해 연구조사를 WIPO가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WIPO는 서베이, 설문조사 및 연구를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연구결과 동 지역에 속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개발의 도구로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이들 국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장하였다.

- 국가 지적권 전략계획 수립이 필요함 : 이때 경제개발, 교육, 보건, 과학기술 등 관련분야와의 연계선상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IP와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방법 및 측정도구의 개발이 요구됨
- 교육, 무역, 산업, 보건, 과학기술, 예술 등에 관련된 IP접점을 다룰 수 있는 복합적인 전문가 양성교육이 필요함
-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싱 및 상용화를 촉진시킴
- 기술개발 및 지적재산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ASEAN 지역 R&D 네트워크 조사

영국의 유럽담당 장관, 유럽공동체특허의 도입이 유럽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

[자료원 : Lloyd's List 2003. 2. 11]

영국의 유럽담당 장관인 "Denis MacShane"은 유럽연합의 정치적 동향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글을 기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럽통합의 기본적인 목적은 일자리 창출, 성장 그리고 수억의 유럽인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유럽인들이 열정적으로 받고 있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유럽이 물질적인 면에서의 잠재력이 실현되었을 때 비로소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매년 2억5천만명이 10조7천억 유로를 생산하고 있으며, 유럽은 3억7천만명이 8조7천억 유로를 생산하여 그 차이가 2조 유로에 달하고 있다.

한편, 유럽의 탁월한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산업계와 대학이 창조적인 연구와 자금을 연결

하여 이를 상용화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보수적인 세력들이 "단일 유럽 특허 시스템"을 반대하고 있다. 동 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드는 연구에의 투자를 보상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공동체 특허의 도입이 유럽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중국법원들은 지적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료원 : www.forbes.com, 2003. 2. 11]

중국은 자주 해적의 나라, 소프트웨어 및 T셔츠를 도둑질하는 나라로 비난을 받아왔다.

"고정 관념의 상당부분은 사실이며 서구지재권관점에서 보면 보다 개선되어야 할 것 같지만, 상황이 변화하고 있으며, 최소한 중국법정들은 기꺼이 지재권자들에게 유리한 판결들을 내리고 있다"고 서구변호사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2003년 1월에 놀랄만한 케이스에서, 베이징최고인민법원은 Lego(텐마크의 장난감 제조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하였다. Lego사건에서 베이징 최고인민법원은 미국법정들 사이에서조차도 애매하고 복잡한 영역인 산업디자인에 대한 회사의 저작권보호를 인정하였다.

기본적인 Lego에 대한 의장특허보호는 오래 전에 만료되었다. 이번 사건에서는 Coko Toyo(중국 텐진 소재)라는 회사에 의하여 Lego세트를 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 중국 회사는 그 것들을 중국에서 판매하였으며, 심지어는 텐마크를 포함한 해외로 수출하였다"고 Lego회사의 변호사는 이야기하고 있다.

중국에서 지재권문제를 경험한 적인 있는 변호사들은 중국법원이 산업디자인(혹은 응용미술) 저작권을 기꺼이 보호하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항소법원과 동일한 베이징 최고인민 법원과 같은 지역법원들은 특히 기꺼이 특허권 및 다른 지재권을 집행하고 있다. 베이징법원이 Coko Toyo에게 모조품 Lego를 생산하는데 사용된 형틀을 폐기하도록 명하였기 때문에 Lego사건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해적행위가 만연한 나라에서 강력한 메시지이다.

해적행위는 중국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이 2001. 11월에 WTO에 가입하였고 중국인들이 그들 스스로 지재권의 창조자 내지 소유자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법원들은 부분적으로 진일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1985년까지는 심지어 특허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지재권이 중국인들 손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인정된 권리들에 대하여는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지재권집행이 해가 갈수록 향상되어지고 있다"고 Howson 변호사는 말하고 있다.

[Special Report]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21세기 전략계획 : 미국의 혁신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자료원 : CASRIP Newsletter?Autumn 2002]

2002년은 USPTO의 200주년인 해이다. Bush정부는 USPTO가 많은 문제점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새로운 청장으로 James E. Rogan씨를 임명하였다. 지난 수년간 PTO는 그 구조와 기능 양면에 걸쳐서 많은 문제점들이 거론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여 2002. 7. 5 Rogan 청장은 PTO의 업무부담문제, 특허의 질적향상, 심사관의 교육, 그리고 전자정부를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내용으로 하는 21세기 전략계획(The 21st Century Strategic Plan)을 발표하였다.

과거제도의 문제점들

현재 PTO는 40만건이 넘는 심사적체건 보유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매년 37.5만건정도의 새로운 출원이 들어오고 있다. PTO가 평균적으로 연간 새로이 17.5만건을 등록처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심사적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심각한 심사적체가 되는 원인중의 하나는 기술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서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어떤 출원서류들은 Supporting Data를 포함하여 수백쪽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추정자료에 의하면 7백만건에 이르는 특허출원이 현재 전세계적으로 심사과정에 Pending이 되어있고 심사부담(Workload)은 매년 20~30%씩 늘어가고 있다.

현재 특허적체율(Pendency Rate)은 평균 2년이 넘고 곧 3-4년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거기에 더하여 PTO는 종종 특허의 질문제와 심사관의 심사수준에 관한 불만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상하양원 함께 PTO에 대하여 Happy하지 않다.

21세기 전략계획

USPTO는 지적재산제도를 통하여, 강하고 건전한 세계경제를 이끌고, 혁신을 위한 투자를 증진시키고 기업이 정신을 함양하며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자신의 역할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말하고 있다. 새로운 전략계획은 5년 내에 달성할 다음 3가지 목적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첫째, PTO 모든 절차의 간소화, 신속화 그리고 정확화 도모

둘째, 출원인의 목소리와 국내 및 세계시장의 요구사항에 대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경청한다.

셋째, 좀 더 생산적이고 현재 접근방식보다 비용을 \$5억 절감한다.

이 전략계획은 현재까지의 PTO가 하나의 방법으로 모든 절차에 적용하던 방식으로부터 외부조직의 검색결과를 활용하고 출원인이 출원심사절차의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4가지 방법의 심사절차로 바꾸도록 (from a one size fits all process to four track examination process) 디자인 되어있다.

새로운 5개년 계획에 의하면 Rogan청장은 2,000명의 심사관을 새로이 채용하고, 종이없는 특허청을 실현하고, 출원절차에 수시 review를 행하며 종전에 심사관이 하던 선행기술검색을 외부조달 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심사적체의 75%를 해소하고 등록된 특허가 도전받지 않도록 심사의 질이 높아질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 계획의 이면에 있는 추진계획중의 하나는 과도한 청구항을 제한하고 제제를 가하는 메카니즘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발명자들이 수백, 심지어 수천 개의 청구항을 갖는 출원을 억제하게 될 것이다. Rogan청장은 "모든 것을 출원하고 그 결과를 주시하는" 식의 출원이 줄어들 것을 희망한다. 그는 "출원인이 더 많은 청구항을 원하면 할수록 그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된다" 또는 "출원인이 PTO에 더 많은 일을 시킨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요청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유시장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계획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PTO를 Review할 것과 모든 자원을 심사의 질과 타이밍으로 전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실행계획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5년간 실시될 것이다.

첫째, 특허를 받기까지 소요기간을 18개월로 단축

둘째, 실행가능한 지재권을 위하여 세계적 연대를 통한 범세계적인 기본틀의 창조

셋째, 가까운 장래에 적용할 적절한 수수료체계의 보유

새로운 계획은 신속성(Agility), 유능함(Capability), 생산성(Productivity)의 3가지 정책이념 하에서 이루어진다.

신속성(Agility) 전략계획은, 점증하는 복잡화와 업무량의 증가 그리고 21세기 경제를 특징지우는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응할 수 있도록 PTO의 조직과 업무절차가 좀 더 유연해질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하에서 전략계획은 2개의 의욕적인 변화를 PTO에 도입한다.

종이없는 PTO 전략계획은 상표에서는 2003년 10월부터, 특허에서는 2004년부터 절차의 전자화를 목표로 한다. 이는 특허적체 해소와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현재의 EFS라고 불리는 전자출원시스템은 실패작이다. 왜냐하면 이는 사용이 어려워서 결과적으로 3%의 사용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PTO는 EFS를 대체하고 타국에서도 동일한 전자출원을 가능케하는 범용적인 특허출원 기준을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할 것을 원하고 있다.

검색의 Out-Sourcing

PTO는 선행기술 검색업무를 개인이나 세계적 계약자에게 외주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Rogan청장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선행기술 검색업무를 나누고, 심사관의 일을 덜어주며 출원인에게 출원절차 진행의 타이밍을 자유로이 결정하도록 해주는 4가지 방법의 심사절차로 이행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검색은 다음 4가지 중 하나에 의해 실행될 것이다. 즉 특허청 자체, 외부의 사적인 계약자, 타국의 특허청, PCT하에서 검색을 수권받은 국가이다. 특허청 스스로 행하는 것은 작고, 독립된 발명가에 한정될 것이다.

2002. 6. 18 PTO는 상기 4가지 중 하나인 사적 계약자로서 전자출원을 위한 계약자로 Aspen Grove사, AutoDocs사, First to File사, Legalstar사 그리고 LexisNexis사를 지정 발표하였다.

이들은 무료로 PTO에 서비스하게 된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출원인에게 선행기술검색비용은 얼마나 과해질 것이냐이다.

PTO의 세계화

전략계획상의 4가지 방법시스템(Four Track System)에 의하면 선행기술 검색의 외주는 외국 특허청 직원활용을 포함한다.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은 세계특허등록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 기타 선진국들은 심사적체와 더욱 복잡화된 청구항의 심사라는 같은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그러한 문제점은 미국 발명가들이 타국에서 특허를 보호받을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 반면에 미국 발명가들이 국제적으로 신속히 보호받을 능력을 해치고 있다.

PTO는 유럽, 일본특허청과 협력함으로써 발명가들이 미국과 그같은 나라들에 동시에 출원토록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외국특허청과 업무를 나눔으로써 특허심사절차의 엄청난 효율성을 기하고 세계적으로 중복된 노력을 경감시키는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능함(Capability)

“이러한 전략적 사고하에서, 업무력이나 절차개선을 통하여 심사의 질은 높아질 것이다”고 PTO는 말한다.

새로운 심사관 확충

전략계획은 2,000명의 새롭게 자격을 갖춘 심사관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들은 채용전에 새로운 test를 거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든 심사관과 그들의 보좌관들도 새로운 교육을 받고 그들의 모든 경력에 대하여 “자격재심사”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로서 결국에는 채용률이 떨어지게 되고 2008년까지 추가로 2500명을 채용할 필요성이 없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생산성(Productivity)

생산성 전략계획은 PTO의 심사적체의 규모를 대폭 줄이고 사람과 방법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심사적체(Backlog)의 해소

전략계획은 2008년까지 특허소요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평균 18개월로 줄이고 상표소요기간을 12개월로 줄이려는 것이다. 이 계획에 의하면 PTO가 현재의 1년 대신에 6개월이내에 심사에 착수한다. 새로운 수수료구조는 출원수수료와 심사수료를 분리하며 출원인이 그들의 발명이 상업적으로 유망하기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시간을 허용하다. 심사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출원 후 18개월까지는 심사를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현재의 출원규정이 같은 종류의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수수료개정안

가. 제시된 특허수수료 개정안은 전략계획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으로서 35 U.S.C §41에 규정되어있다. 새로운 계획에 의하면 평균적 특허출원비용은 현재의 약 \$ 6,000에서 \$ 12,000으로 50% 늘도록 되어있다. 출원인은 출원수수료와는 별도로 높은 심사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수수료를 구분하는 근거는 심사관들이 버려지는 출원에 대하여는 시간을 뺏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출원인은 최초의 적은 출원비 지급만으로 심사를 연기할 수 있고 그 후에 그들의 발명이 상업적으로 유망한 것인지를 점검하면서 18개월까지는 기다릴 수가 있다. 제안된 수수료는 실용신안특허인 경우 \$ 300의 낮은 출원수수료와 \$ 1,250의 심사수수료로 되어있는데 이는 현재의 양쪽수수료를 합한 \$ 740에 비하여 2배이다.

제안된 출원 수수료는 청구항의 수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는 수수료이다. 청구항이 많을수록 출원 수수료는 많이 부과된다. 이러한 당근과 채찍식의 접근방법(Carrot-to-stick approach)은 청구항이나 쪽수의 증가에 따라 출원 수수료를 상당한 정도로 올리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기본적인 독립항수를 3개라고 하자 이 경우 4번째 독립항은 \$ 160이 추가되고 5번째 독립항은 \$ 320이 추가되며 6번째 청구항은 \$ 640이 추가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지나치게 양이 많은 출원에 대한 부가료의 성격이다.

추가적인 부가료는 청구항들이 pending 되어 있는 다른 출원상의 청구항들과 대비하여 특허가능성이 명확치 않은 경우에도 부과된다. 과다한 청구항들에 대한 수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여러 건의 출원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PTO는 특허가능성이 명확치 않은 청구항을 가지고 있는 출원에 대하여는 \$ 10,000이 넘는 부가료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출원인이 외부 검색을 이용한다면 수수료는 경감될 것이다. 그러나 선행기술 검색을 담당하는 기업들은 PTO의 새로운 수수료와는 별도의 수수료를 청구하게 될 것이다.

출원인은 또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조기 심사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인은 전자출원을 해야 하고 독립항이 3개를 넘지 않아야 하며 12개의 청구항을 넘지 않아야 한다.

계획에 의하면 예상되는 수수료 총액은 \$ 15억으로서 이는 출원 및 심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커버하고도 \$ 1.6억이 남게 된다. 통상 남는 돈은 Homeland Security 항목으로 사용되어 왔다.

새로운 전략 계획에 대한 일반의 반응

전략계획안은 현재 부분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2003 회계연도 세출법안의 전면적인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허와 상표분야의 종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질과 효율을 개선하려는 PTO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몇 개의 중요한 및 수수료 제안에는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들은 수수료 제안을 “불필요하게 가혹하고 징벌적인 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비판자들은 수수료 개정안이 합리적인 청구항을 갖는 출원인 경우에도 지나치게 수수료를 높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들면 6개의 독립항을 포함하여 50개의 청구항을 갖는 출원인 경우 현재는 수수료가 \$ 1,500을 약간 넘는 수준인데 비해서 새로운 안에 의하면 수수료가 \$ 12,670을 넘게 된다. 지재권 관련 조직과 변리사들은 개정안이 절차에 따른 수수료라기 보다는 과도하고 징벌적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고 또한 이것은 쪽수가 많고 여러건의 출원을 하려는 발명가의 의욕을 꺾는, “행위수정(modify behavior)”을 위한 추가적인 Incentive라고 말하고 이는 결국 특별히 출원이 복잡한 것인 경우에는 출원 건수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수수료 개정안과 더불어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선행기술의 outsourcing”과 “심사의 지연신청”이다. 많은 비판자들은 유럽 특허청이 그들의 검색기능과 심사기능의 분리를 포기하고 현재는 함께 처리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선행기술 검색업무가 외부에서 처리된다면 그 검색업무의 질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어렵게 될 것이다. 비판자들은 아웃소싱에 따라 검색업무의 질적 면에서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고 또한 시스템의 오용 내지 남용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허사무소협회(POPA) Ronald Sem 회장은 “심사의 지연과 선행기술 검색을 출원인의 컨트롤 하에 두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기업이, 소기업의 특허에 비해 미소한 차이점을 갖는 청구항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을 통하여 소기업을 능가하게 되는 「특허홍수」를 맞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심사를 18개월까지 지연시킬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지재권법협회(AIPLA)의 Michael Kirk 이사는 이제도가 심사관과 출원인의 부담을 대부분은 일반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한다. 심사지연된 기간은 결국 일반인이 그 특허가 등록될 것이라고 알기까지는 “보증되지 않은 기간”으로 남게 될 것이다. Jeffery Snow 변리사는 이렇게 말한다. 새로운 안에 의하면 특허의 종합적인 보호는, 가장 고수익의 좋은 발명을 제외하고는 금지적으로 비싼 것으로 될 것이다. 발명가들이 그들의 특허에 대한 투자에서 적절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들의 창조적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의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USPTO가 그의 심사절차를 개선하고 세계적 기술변화를 수용하기 위하여 구조적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Snow씨가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발명가에게 현실적으로 손에 질 수 있는 특허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야말로 아이디어와 상품시장에서 진보와 경쟁을 북돋우는 것이며 이것이 곧 과학의 진보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PTO는 효율성과 심사의 질 면에서는 옳은 제도에 들어선 것 같아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PTO는 현대의 과학과 기술에서 혁신이 특허출원에 있어서 “복잡성”을 추가해 왔다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PTO는 특허출원의 절차가 균형있고 적절하게 진행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복잡한 출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징벌적이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전략계획 하에서는 대기업과 소기업, 독립발명가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적 징벌들 간에 균형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Patent 21 2003년 3월호

(통권 제46호)

등록번호 : 서울 라09257
 발 행 : 한국특허정보원
 발행 및 편집인 : 민 경 탁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4-1
 편집위원 : 이재정, 강치운, 노성열
 기 획 : 최 승 중
 광고문의 : 기획팀 (02-3452-8144)
 디 자 인 : IDO (02-3445-9849)
 인 쇄 : 삼원정판사

특허기술정보서비스 : www.kipris.or.kr

선행기술조사서비스 : www.chosa.or.kr



전화 : (02)3452-8144 FAX : (02)3453-5951